

【 7 】 양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6. 6. .

제 출 자 : 양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- 2006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「지방재정공시제도」 도입과 관련하여
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을 매 회계연도마다 지역주민에게 공시도록
의무화함에 따라
- 재정의 책임성 확보와 주민자율통제 활성화를 위하여 「양주시 지방재정
공시 심의위원회」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의 목적·법적 근거에 관하여 정함(안 제1조)
- 나. 위원회의 구성, 직무, 임기에 관하여 정함(안 제2조)
- 다. 위원회 의결 및 심의사항, 회의에 관하여 정함(안 제3조 ~ 제5조)
- 라. 심의사항의 관계기관 의견청취에 관하여 정함(안 제6조)
- 마. 수당지급과 기타 조례 규정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정함(안 제7조, 제8조)

양주시 조례 제 호

양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대학교수, 시민단체 대표, 공무원,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
2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시 선정 사항

제4조(위원회의 대행)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6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7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양주시재정운용상황공개에관한조례」를 폐지한다

관계법령 발췌서

【 지방재정법 】 – 2005. 8. 4 전부개정, 2006. 1. 1 시행

제60조 (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
1. 세입·세출예산의 집행상황
2.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
3. 지방채·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
4. 채권관리현황
5. 기금운용현황
6.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
7.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
8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·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 지방재정법 시행령 】 – 2005. 12. 30 전부개정, 2006. 1. 1 시행

제68조(재정운용사항의 공시방법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(이하 “공통공시”라 한다)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(이하 “특수공시”라 한다)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
2. 지방재정분석·진단의 결과
3.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
4.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.
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.

⑤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

제70조(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공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②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